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5-57
----------	-------

제출년월일 : 95. 12.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세 무 과)

##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면제 수혜폭을 확대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맞게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과학관육성법에 근거한 과학관 설립 유도 및 서민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폭을 확대코자 함.

##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3.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본인에게 자동차 면허세 면제(안 제2조제2항)
-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안 제6조제7호)
-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안 제5조의2)
- 서민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40㎡이하)단지내의 주민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안 제12조제2항)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그 임대수익금전액의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지방세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에우동예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u>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u>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제6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u>..... ..... ..... ..... .....</p> <p>제5조의2(<u>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u>) <u>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6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p>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p>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면)..... ..... ..... ..... ..... ..... .....</p>
<p>1. ~6. (생략)</p>	<p>1. ~6.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7. <u>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u></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①(현행과 같음)</p>
<p>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u>영구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u>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u>영구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u>과 당해 <u>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상 이 등 급 분 류 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급 수</th> <th style="width: 80%;">분 류 번 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급</td> <td>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급</td> <td>108, 109, 111, 112, 11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급</td> <td>25, 26, 28, 29, 41, 73, 77, 9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 급 (복 합 호수자)</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1 항</td> <td>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30, 13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항</td> <td>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td> </tr> </table>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d> <td>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1항 및 2항에 정한 지하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td> </tr> </tbody> </table>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 합 호수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1 항</td> <td>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30, 13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항</td> <td>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td> </tr> </table>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1항 및 2항에 정한 지하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p>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 에..... [삭 제]</p>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 합 호수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1 항</td> <td>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30, 13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항</td> <td>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td> </tr> </table>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1항 및 2항에 정한 지하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